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7월 1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 제안이유

-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 관리하도록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
-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기구·인력을 중점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필수정원 증원과 함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86만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2,008명에서 2,103명으로 95명을 증원함.(안 제2조 및 제3조)

· 기관별 정원조정

구분	계	집행기관						의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정원	2,008	1,980	786	101	38	666	389	28
조정	2,103	2,073	829	102	44	699	399	30
증·감	+95	+93	+43	+1	+6	+33	+10	+2

· 직렬별·직급별 정원조정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제외)

구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정원	1,629	14	105	344	537	394	235
조정후	1,722	15	111	370	559	421	246
증·감	+93	+1	+6	+26	+22	+27	+11

-기능직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정원	364	10	33	54	117	150
조정후	366	11	42	66	107	140
증·감	+2	+1	+9	+12	△10	△10

-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사업소를 시본청 국·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재조정함.(안 별표)
- 한시정원인 복식부기정원(10명), 디지털재정팀정원(2명), 혁신분권팀정원(3명), 지하철건설사업단정원(10명)을 본청 정원으로 전환함.(안 부칙)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 5. 심사결과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00호
의결 연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안년월일 : 2005년 7월 14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새로이 신설되는 팀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팀은 신설을 폐지하고 업무형평성에 의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은 신설됨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 2. 주요골자

- 회계과 청사관리팀, 가정복지과 장묘문화팀, 도시계획과 입지지원팀 신설을 폐지함에 따라 시 본청 6급 154명을 151명으로 3명 감축.(안 별표)
- 원미구 경제교통과에 자전거 문화팀이 신설됨에 따라 구청란 6급 148명을 149명으로 1명을 증원.(안 별표)
- 오정구 총무과 통신전산팀 인력보강을 위해 구청란 7급 155명을 156명으로 1명 증원.(안 별표)
- 시 본청 차량등록 민원업무처리 인력보강을 위해 시 본청 7급 244명을 245명으로 1명 증원.(안 별표)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중 6급란 및 7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동
6급	<u>368</u>	<u>151</u>	5	18	8	<u>149</u>	37
7급	<u>561</u>	<u>245</u>	9	27	11	<u>156</u>	113

“별지”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2,103	827	30	102	44	701	399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722	607	20	91	32	577	395
2급	1	1					
3급							
4급	14	7	1	3		3	
5급	111	37	2	8	1	26	37
6급	368	151	5	18	8	149	37
7급	561	245	9	27	11	156	113
8급	421	149	3	31	3	171	64
9급	246	17		4	9	72	144
별정직 계	4	4					
5급상당							
6급상당	1	1					
7급상당	3	3					
8급상당							
연구직 계	2	2					
연구원							
연구사	2	2					
지도직 계	8	8					
지도관							
지도사	8	8					
기능직 계	366	205	10	11	12	124	4
기능6급	11	10				1	
기능7급	42	31			2	8	1
기능8급	66	39	3		2	20	2
기능9급	107	56	6	4	6	34	1
기능10급	140	69	1	7	2	61	

[수정안포함]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008명”을 “2,10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980명”을 “2,073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28명”을 “3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773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조례 제2020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조례 제2028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조례 제2042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u>2,103</u>	<u>829</u>	<u>30</u>	<u>102</u>	<u>44</u>	<u>699</u>	<u>399</u>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u>1,722</u>	<u>609</u>	<u>20</u>	<u>91</u>	<u>32</u>	<u>575</u>	<u>395</u>
2급	1	1					
3급							
4급	<u>14</u>	<u>7</u>	1	3		3	
5급	<u>111</u>	<u>37</u>	2	<u>8</u>	1	<u>26</u>	37
6급	<u>368</u>	<u>151</u>	5	18	<u>8</u>	<u>149</u>	37
7급	<u>561</u>	<u>245</u>	<u>9</u>	27	<u>11</u>	<u>156</u>	<u>113</u>
8급	<u>421</u>	<u>149</u>	3	31	<u>3</u>	<u>171</u>	<u>64</u>
9급	<u>246</u>	<u>17</u>		4	<u>9</u>	<u>72</u>	<u>144</u>
별정직 계	4	4					
5급상당							
6급상당	1	1					
7급상당	3	3					
8급상당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8	8					
지도관							
지도사	8	8					
기능직 계	<u>366</u>	<u>205</u>	10	11	<u>12</u>	<u>124</u>	4
기능6급	<u>11</u>	<u>10</u>				1	
기능7급	<u>42</u>	<u>31</u>			<u>2</u>	8	1
기능8급	<u>66</u>	<u>39</u>	3		<u>2</u>	<u>20</u>	2
기능9급	<u>107</u>	<u>56</u>	6	4	6	<u>34</u>	1
기능10급	<u>140</u>	<u>69</u>	1	7	2	<u>61</u>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008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980명</u></p> <p>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u>28명</u></p> <p>부칙&lt;2000. 9. 25 조례 제1773호&gt;</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p> <p>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복식부기 10명은 한시정원으로 <u>2006년 12월 31일까지 둔다.</u></p> <p>부칙&lt;2004. 6. 4 조례 제2020호&gt;</p> <p>①(시행일) (생략)</p> <p>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디지털 재정팀 2명은 <u>한시정원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둔다.</u></p>	<p>제2조(정원)----- -----<u>2,103명</u>----- -----</p> <p>1. -----<u>2,073명</u></p> <p>2. -----<u>30명</u></p> <p>부칙&lt;2000.9.25 조례 제1773호&gt;</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p> <p>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①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부칙&lt;2004. 6. 4 조례 제2020호&gt;</p> <p>①(시행일)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현행	개정안
<p>부칙&lt;2004. 8. 9 조례 제2028호&gt;            ①(시행일)(생략)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혁신분  <u>권팀 3명은 한시정원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둔다.</u></p>	<p>부칙&lt;2004. 8. 9 조례 제2028호&gt;            ①(시행일)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
<p>부칙&lt;2004. 11. 11 조례 제2042호&gt;            ①(시행일) (생략)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지하철  <u>건설사업단 10명은 한시정원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둔다.</u></p>	<p>부칙&lt;2004. 11. 11 조례 제2042호&gt;            ①(시행일)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

## 기구 및 정원책정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 관리하도록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
-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 및 인력을 중점 보강하는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 일반직

합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93	1	6	26	22	27	11

#### · 기능직

합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2	1	9	12	-10	-10

### 3. 비용소요 내역

- 인력증원에 따른 연간 추계 소요 인건비

구분	총계	승진에 따른 차액 인건비						9급 신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증원인원	95	104	1	6	26	31	39	95
소요예산(백만원)	3,595	752	9	72	247	194	230	2,843